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24 발의연월일: 2021. 6. 30.

발 의 자: 강준현·홍성국·박상혁

임호선 · 강선우 · 김민석

민병덕 · 홍기원 · 김민기

최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 도시"라 함) 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이하 "원주민"이라 함)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 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사업시행자가 행복도시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등의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복도시 건설과 함께 원주민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 립된 주민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조경, 무연분묘 이장 등 행복도시 기반공사 단계에서 주민 단체가 수행하던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행복도시건설사업이 성숙 단계로 진입하여 건설청과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시설물이 세종시에 단계적으로 이관되어 주민단체의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원주민의 소 득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건설청장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주민의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보장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8호의2 신설 및 제54조제3항).

법률 제 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 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제54조제3항 중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를 "건설청장, 세종특별자 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주민 재정착"을 "주민 재정착과 생활안 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8의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
	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
	실한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9. ~ 17. (생 략)	9. ~ 17. (현행과 같음)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①・②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	③ 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또는 사업시행자
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어	
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	
사업 지원, 그 밖에 <u>주민 재정</u>	
<u>착</u> 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	주민 재정착과 생활안정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